

## 부산광역시남구



수신 감만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귀하 (경유)

제목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

- 1. 지적재조사사업! 우리 땅을 반듯하게, 가치있게,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.
- 2. 우리 구 감만동 2-11 일원 **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「지적재조사에** 관한 특별법」제16조에 따라 『남구 경계결정위원회』에서 의결한 경계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립니다.
- 3.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 결정 통지된 내용과 같이 경계가 확정됩니다.
- 4. 아울러, 경계가 확정된 후 면적 증·감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면적이 바뀌게 되며 향후 면적 증·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결정하여 증·감 면적에 따라 지급 및 수납할 예정이오니, 관련 문의는 우리 구 토지정보과(☎ 051-607-477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감만1지구 경계결정 통지서
  - 2. 경계결정 이의신청서. 끝.



주무관 **박재혁** 지적팀장 **최철영** 토지정보과장 **송영주** 

협조자

시행 토지정보과-4779 (2022. 4. 20.) 접수

우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(대연동) / http://www.bsnamgu.go.kr

전화번호 607-4775 팩스번호 607-4759 / pjh0216@korea.kr / 부분공개(6)

새로운 백년의 비전, 세계평화특구 남구